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2. 22.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12.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6. 3. 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1.)

상정 · 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6. 3. 17.)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홍기원의원)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 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① 특임공관장 ② 14등급 공관장 ③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의 면직 60일 후 퇴직 규정을 30일로 단축하여 제도 개선 및 보수 지급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 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⑦ ----- ----- ----- ----- ----- ----- ----- ----- ----- ----- ----- 30일 ----- -----.	

해당 직위에서 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 규정¹⁾에 대한 특례로서, 그 특례 인정의 기준은 ‘직위의 법적 성격’에 있는 것으로 보임.

1)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특임공관장 등의 퇴직 전 60일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①특임공관장, ②14등급 공관장 ③ 정년초과근무 가능직위 공관장²⁾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공관장별 면직 관련 조문 비교>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	여타 공관장
「외무공무원법」 제4조(특임공관장)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외무공무원법」 제26조(당연 퇴직 등)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³⁾ 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외무공무원법」 제26조(당연 퇴직 등)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

2) [공관장 유형별 정의 및 법적 근거]

공관장 유형	정의 및 법적 근거
특임	경력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따라 특별히 임명하는 직위, 채용시험·자격심사·정년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외무공무원법」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등급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중 14등급은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체계상 최고등급에 해당, 그 자체가 별도의 신분상 특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재외공관장 등 고위직에 보임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에 퇴직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됨.
정년초과근무 가능직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정 정년(60세) 에 도달하였음에도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직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 [별표 5]는 참고자료 3 참조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	여타 공관장
* 동 조항은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30일로 단축되었음.	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u>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u>	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u>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u>	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월 말 기준 재외공관장 174명 중 ① 특임공관장은 15명 ② 14등급 공관장은 13명 ③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은 46명임.

퇴직 전 60일의 유예기간 부여는 해외 근무 공관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로써, 특임공관장 및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의 경우 2000.12.29. 「외무공무원법」 전부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신설되었고, 14등급 공관장은 2005.11.8. 일부개정으로 120일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9.1.15. 일부개정으로 60일로 단축되었음⁴⁾.

3)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 참조

이는 해외 근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임공관장의 업무 인계인수, 귀국보고서 작성·제출, 국내 복귀 준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실제로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외교부예규 제77호)⁵⁾에 따라 귀국 후 신임 공관장에 대한 인계인수, 귀국보고서 제출 및 소관 국장과의 업무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면직 이후 일정 기간의 퇴직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됨.

다만, 외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의 실제 귀임까지의 소요기간은 통상 약 2~3주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임·14등급·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과 그 외 일반 공관장 간에도 발령일 및 귀임일 지정에 있어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이 실제 귀임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유예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등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퇴직 전 유예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등의 총 규모를 보면,

5)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외교부예규 제77호)

5. 공관장 간 업무 인계인수 절차 체계화

가. 인계인수 시기 및 방법

- 이임공관장은 원칙적으로 귀국 즉시 최단 시일 내에 신임공관장에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 인계인수 항목
 - 공관 현황(일반 현황, 그간 실적, 현재 추진중인 과제, 교민 현황 포함)
 - 소속 직원 현황 및 참고사항과 공관 예산회계 관련 사항
 - 본국과 주재국 간 외교 현안, 주재국 정치·경제·사회·문화 현황 등
 - 업무분야별 주재국 주요 인물 정보(가급적 공관장의 주요 인사 접촉 기록을 검색이 용이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계)
 - 공관내규, 보안관계 업무 등

① 특임공관장 94명에게 약 19억 3천만원, ② 14등급 공관장 23명에게 약 5억 5천만원, ③ 정년초과가능직위 공관장 13명에게 약 2억 9천만원이 지급되었음.

<퇴직 유예기간 동안 공관장 급여 등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퇴직 연도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가능직위 공관장	
	인원	지급 총액	인원	지급 총액	인원	지급 총액
2021	15	297,834	3	69,202	1	20,817
2022	20	410,264	6	139,648	3	62,322
2023	17	363,774	4	94,420	3	65,436
2024	6	121,509	3	73,986	3	66,961
2025	36	740,530	7	175,069	3	74,445
계	94	1,933,911	23	552,325	13	289,981

※ 자료 :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2026.2.2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면직 후 60일이라는 기간이 직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이미 면직 후 퇴직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현재 공포·시행 중인바⁶⁾, 제도적 성격이 유사한 14등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4.11.26.)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2025.11.28.)에서 당초 ‘면직 후 60일 경과 후 퇴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으며, 2026.2.1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급 공관장 및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부칙에 두고 있음.

이는 개정안의 시행 전에 재외공관장의 직위에서 면하였으나, 시행 당시 면직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임공관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는지 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0일이 되는 날 퇴직하는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종전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장의 직

위에서 면하는 특임공관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특임공관장의 퇴직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해당 개정안의 부칙에 제4조제4항에 대한 적용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의 ‘제4조제4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

특임공관장에 관한 규정은 이미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30일로 단축되어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제4조제4항 등 특임공관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4등급 공관장 및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공관장에 관한 퇴직 유예기간 규정만을 60일에서 3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안 제4조제4항에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에 맞게 개정문을 정비하는 한편, 이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조제4항’을 함께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 가. 특임공관장의 퇴직에 관한 규정은 이미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반영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4항 삭제).
- 나. 안 제4조제4항을 정비함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에서 ‘제4조제4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을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 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	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 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	----- ----- ----- ----- ----- ----- ----- <u>30일</u>-----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 ----- ----- ----- -----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	---	--	---

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 ----- ----- ----- ----- ----- ----- <u>30일</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u>제4조제4항</u> 및 <u>제26조제4항</u> · <u>제7항</u>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	부 칙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u>제26조제4항</u> 및 <u>같은 조 제7항</u> ----- ----- ----- ----- -----

		부터 적용한다.	-----.
--	--	----------	--------

법률 제 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략)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 ----- ----- ----- ----- ----- ----- ----- ----- ----- -----30일-----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	⑦ ----- ----- ----- ----- ----- ----- ----- -----

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	-----
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	-----.
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	-----
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u>	----- <u>30</u>
<u>일</u>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	<u>일</u> -----
다.	--.